

# 행 정 자 치 부

##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강원도는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2015. 11. 6. 제정하여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운영<sup>42)</sup>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목적세<sup>43)</sup>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 예산과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15. 7. 22.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계획<sup>44)</sup>을 수립하여 목적세를 관장하는 부서로 하여금 목적세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강원도 소방본부<sup>45)</sup>는 2015. 7. 24. 소방

42) 예산액 : 2015년 403,000천원, 2016년 738,645천원

43)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4) 강원도 ○○과-0000(2015. 0. 00.) 목적세의 특별회계설치 추진계획 보고

45)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특정부동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관장

안전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계획<sup>46)</sup>을 수립하여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계획에 따르면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액 뿐만 아니라 일반재원 성격의 소방안전교부세액,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 소방본부는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도, 강원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015. 8. 14.부터 9. 3.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앞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46) 강원도 ○○○○과-000(2015. 0. 00.)